

2023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



2022. 8.

서울대학교



# 2023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

## 1. 전형 기본방침

### □ 선발 인재상

-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인재
- 학문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보인 인재
- 약학 관련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
-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과 제약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 대학의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을 겸비한 인재

### □ 선발 시 고려사항

- 입학생의 다양성 확보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회 제공
- 대학의 글로벌화

### □ 선발 방법

- 서류 평가 및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 학업 관련 활동 및 전공적성, 교과외 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기타 문제 발생 시 약학대학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고하여 선발

## 2. 전형일정(예정)

구 분	일 시(예정)	담당/장소	비 고
1. 선수/유사선수과목 확인*	현재 ~ 2022. 11. 09.(수)	약학대학	E-mail 문의 (snupharm@snu.ac.kr)
2. 지원서, 자기소개서 접수, 성적입력 (인터넷 접수)	2022. 11. 07.(월) ~ 11. 09.(수)	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인터넷 접수만 시행하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입력 (결제까지 완료)
3. 지원 서류 제출	2022. 11. 10.(목) ~ 11. 14.(월)	약학대학	우편 또는 방문 제출
4.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2. 29.(목) 17:00 이후	약학대학 홈페이지 (https://www.snupharm.ac.kr)	
5. 2단계 전형	2023. 1. 6.(금)	약학대학	
6.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 16.(월) 17:00 이후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s://admission.snu.ac.kr)	
7.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보완 제출	2023. 1월 중	약학대학	합격자는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및 자퇴(전과)증명서를 제출
8. 충원합격자 발표	2023. 1. 27.(금) 17:00까지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s://admission.snu.ac.kr)	합격대기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개별 통보)
9. 충원합격자 등록 및 추가서류 보완 제출	2023. 1. 30.(월) 16:00까지	농협(지역 농협 포함) 전국 소재 지점	합격자는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및 자퇴(전과)증명서를 제출

가.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수/유사선수과목 확인은 선수과목 인정리스트를 약학대학 홈페이지(<https://www.snupharm.ac.kr>)  
에서 확인한 후 리스트에 없으면 메일로 인정가능 여부를 문의 바랍

나. 유의사항

지원서 접수 시 반드시 유웨이어플라이에 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적 등을 입력하고,  
지원 서류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우편 송부(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약학대학	61명	2명 이내				

- 가. 전형유형과 선발인원은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 4. 전형별 지원자격

#### 가. 일반전형

- 1) 대학<sup>주1)</sup>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sup>주2)</sup>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대학에서 수학(數學)과목 3학점<sup>주3)</sup> 이상 취득(예정)자
- 3) 당해 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 취득자(단, 외국인, 재외국민 중 해외 소재 대학 재학 및 졸업생은 면제)
- 4) 공인영어시험성적(TEPS 또는 TOEFL)을 취득한 자(정기 시험만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이어야 함.)

주1)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을 포함하며, 외국 대학의 경우 우리 대학의 별도 심사에 따름

주2) 출신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 이상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수료증명서에 2학년 이상 수료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 지원자는 출신대학의 학칙 또는 규정 등에서 2학년 이상 수료기준 학점을 반드시 확인 요망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주3) 수학(數學)과목 인정범위: 수학 관련 과목으로서 교양 또는 전공의 구분이 없으며 우리 대학의 심사에 따름

## 나. 특별전형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1) ~ 5)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농·어촌 학생

아래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부·모)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12년(지원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국내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은 농어촌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반드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해야 함
- ※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기간 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함
-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됨
- ※ 주민등록이 직권발급 또는 신고발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재학 중 교환학생으로서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프로그램의 배경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해당 기간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별도로 심사할 수 있음
-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 11월부터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의 가)~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호(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 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구성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 3) 특수교육대상자

아래의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종전 1급~3급에 해당

※ 장애 등급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장애 (재)진단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함

### 4)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재외국민-①	재외국민-④
가)항 ① 해당자 중 국내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가)항 ① 해당자 중 외국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 가)항 해당자 중 재외국민-①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 시험(PEET)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일반전형 전형방법을 따름

※ 가)항 해당자 중 재외국민-④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당해학년도 약학대학입문 자격시험(PEET)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북한이탈주민 : 최근 7년 이내(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 5) 군 위탁생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5. 전형방법

가.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GPA, 공인영어성적, PEET 포함), 학업관련 활동 및 전공적성, 학업외 활동,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함

나. 일반전형은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선발하여 2단계 전형을 시행함

- 다. 특별전형은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또는 1단계 전형에 따라 적정 인원(별도로 정한 모집인원이 없는 경우)을 2단계 대상자로 선정함
- 라. 동점자 발생 시 사정원칙에 따라 약학대학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발함

## 6. 제출서류

### 가. 일반전형

전형구분	제출서류
일반전형 (①~⑥, ⑧~⑩은 필수서류)	<p>① 지원서 및 수험표</p> <p>②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고등학교 재학 경험자의 경우 성적표</li> <li>-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경험이 있는 자는 재학 기간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li> </ul> <p>③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된 대학 성적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前)적 대학 성적표를 포함하여 제출</li> <li>- 2023년 2월 2학년 수료예정자의 경우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제출</li> </ul> <p>※ 단, 최종합격자는 발표 후 정해진 기간에 2학년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는 학점체계(성적평점환산기준 포함) 및 지원자의 학점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li> <li>-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li> </ul> <p>④ 당해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표</p> <p>⑤ 공인영어 성적증명서(TEPS 혹은 TOEF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만 인정</li> <li>-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은 TOEFL(원본 성적표 또는 인터넷 출력물)만 해당되며, TEPS 성적은 별도 조회하므로 제출 불필요</li> </ul> <p>⑥ 자기소개서</p> <p>⑦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연구분야, 전문분야, 사회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li> <li>- 대학생활, 학업·연구능력, 언어·세계화 능력, 봉사·인성에 관련된 기타서류 등</li> </ul> <p>※ 반드시 제출 서식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음</p> <p>※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우 수상경력증명서등은 제출하지 않음</p> <p>※ 상기 증빙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증빙서류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p> <p>⑧ 선수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류(2022년에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선수과목이 학사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p> <p>※ 단, 최종합격자 중 2022학년도 2학기 및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자에 한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에 선수과목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제출</p> <p>⑨ 지원자격 확인서</p> <p>⑩ 학력조회 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대학 졸업자 또는 재적중인 자에 한해 인터넷 지원 시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입력(별도 제출서식 없음)</li> </ul> <p>※ 다만, 학력조회를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p>

## 나. 특별전형

### 1)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	제출서류
농·어촌 재학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 (지원자·부·모)	① 일반전형 ①~⑩에 해당하는 서류 ② 지원자격 확인서(서울대학교 양식) ③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서울대학교 양식) ④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소속학교장 직인 날인) ⑤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⑥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지 전체가 기재된 것)
농·어촌 재학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12년 (지원자)	① 일반전형 ①~⑩에 해당하는 서류 ② 지원자격 확인서(서울대학교 양식) ③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서울대학교 양식) ④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소속학교장 직인 날인) 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소속학교장 직인 날인) ⑥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지 전체가 기재된 것)

###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격	제출서류
공통*	① 일반전형 ①~⑩에 해당하는 서류 ② 지원자격 확인서(서울대학교 양식) ③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① 공통* 해당서류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기준) ③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보장기간 명시)
차상위 자활급여	① 공통* 해당서류                          ②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보장기간 명시)
차상위 장애수당	① 공통* 해당서류                          ②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③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보장기간 명시)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① 공통* 해당서류                          ②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③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보장기간 명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① 공통* 해당서류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보장기간 명시,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① 공통* 해당서류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보장기간 명시, 구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용도>란에 “보장기간” 기재 예) 대학진학용(보장기간: 2020.11.8. ~ 현재까지)
한부모가족 지원	① 공통* 해당서류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보장기간 명시)

### 3)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	제출서류
특수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전형 ①~⑩에 해당하는 서류</li> <li>②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체크리스트(서울대학교 양식)</li> <li>③ 중증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li> <li>④ 장애인 진단서(용도: 대학진학용): 장애소견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학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받은 것 ※ 진단서에는 현재의 상태를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li> </ul>

### 4)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	제출서류
재외국민-⑦	<p>&lt;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중 국내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전형 ①~⑩에 해당하는 서류</li> <li>② 지원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사본</li> <li>③ 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국적취득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을 추가로 제출</li> </ul>
재외국민-⑪ 및 외국인	<p>&lt;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중 외국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전형 ①~③, ⑤~⑩에 해당하는 서류</li> <li>② 지원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사본</li> <li>③ 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국적취득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을 추가로 제출</li> </ul> <p>&lt;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전형 ①~③, ⑤~⑧에 해당하는 서류</li> <li>② 지원자 및 부모의 국적 증명서(여권 사본 등)</li> <li>③ 지원자 및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친자와 부부관계 등)</li> </ul>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전형 ①, ④~⑩에 해당하는 서류</li> <li>② 지원자격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발급)</li> <li>-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li> </ul> </li> <li>③ 아래 중 가능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li> <li>-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재학사실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북한 이외 국가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자는 성적증명서 필수)</li> <li>-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경험이 있는 자는 재학 기간의 학교 생활기록부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li> </ul> </li> <li>④ 대학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이외 국가의 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편입학 경험이 있는 경우 전(前)적 대학 성적표를 포함하여 제출</li> <li>- 국내 대학의 경험이 있는 자는 백분위 환산점수 기재 성적표 제출</li> </ul> </li> </ul>

## 5) 군 위탁생

지원자격	제출서류
군 위탁생	① 일반전형 ①~⑩에 해당하는 서류 ② 교육부장관의 추천 공문

### 다.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 2) 모든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함
- 3)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동시 제출하여야 함
- 4) 대학 성적증명서는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 5)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나 관련 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음
- 6) ‘자기소개서’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며,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 활동의 경우에 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등에 관련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반드시 제출 서식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음
- 7)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결격처리 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특히 연구실적, 각종 수상 실적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허위인 경우 입학 취소 조치
- 8) 모든 서류는 원서접수 당시에 제출된 내용을 근거로 평가함
- 9)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7. 유의사항

- 가. 합격자 중 현재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는 현재 재적중인 대학(원)의 자퇴확인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본교 재적중인 자는 약학기본과정으로의 전과 서류도 가능함)
- 나. 합격자 중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023년 2월 2학년 수료예정자)은 정해진 기간 내에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2학년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최종 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의 출신대학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한 2학년 이상 수료기준 학점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지원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다. 합격자 중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동계 계절학기에 선수과목을 수강중인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선수과목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합격자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 마. 본교에서 수학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아니함
- 바. 본교 약학대학과 동일한 “나” 군에 속하는 타교 약학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없음
- 사. 본교 약학대학과 타교 약학대학에 중복하여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아. 입학고사 성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